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14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윤준병 · 허성무 · 문대림
김 현 · 박홍배 · 안호영
이춘석 · 박민규 · 양부남
박범계 · 이정문 · 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부재함.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가면서 출산을 예

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저조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0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을 포함한다) 중 미이용분의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

제27조제2항제3호 중 “제15조의10”을 “제15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3호의2·제4호·제5호”로 한다.

3의2. 제15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휴업 시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생략)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 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 용요금(계약금·선불금을 포함 한다) 중 미이용분의 반환, 해 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입 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 조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용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
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
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
리업자

<신설>

4. ~ 6.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비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10제1항-----

3의2. 제15조의10제2항을 위반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 6. (현행과 같음)

③ -----

-----.

1. <u>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u>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생략)	1. <u>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3호의2·제4호·제5호</u>----- ----- -----. 2. (현행과 같음)
--	--